

제1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5월 5일 오전 10시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 성립:

1) 참석의원: 21(전원)

金三星, 劉正斗, 林一男, 金南鎭, 文宅鎬, 金吉煥, 金八用, 李在洪,
朴贊圭, 吳世一, 金采庸, 金永完, 李小圭, 鄭應杓, 李文吉, 金子洪,
李福柱, 陳福春, 明南喆, 金京炫, 金慶禧

2) 불참의원: 무

4. 개의선언

오전 10시 20분 (사회 朴贊圭의원)

5. 의장선거:

1) 선거방법: 단기 무기명투표

2) 개표방법: 사회자 지명의 의원 2명 입회

입회의원: 文宅鎬, 金南鎭의원

3) 개표상황:

(1) 총투표수: 21표

(2) 유효투표: 21표

(3) 무효투표: 무

(4) 득 표:

劉正斗: 12표

金采庸: 9표

4) 당선선언(사회): 劉正斗

6. 부의장 선거:

1) 선거방법: 단기 무기명 투표

2) 개표방법: 사회자 지명의 2명 입회

입회의원: 金三星, 林一男의원

3) 개표상황:

(1) 총투표수: 21표

(2) 유효투표: 21표

(3) 무효투표: 무

(4) 득 표:

李 小 圭: 11표

文 宅 鎬: 2표

金 采 庸: 2표

吳 世 一: 1표

4) 당선선언(사회): 李小圭

7. 의장, 부의장 취임:

◇ 휴회선언: 의장

(오전 11시 15분)

◇ 속개선언: 의장. 전원 참석

(오후 2시 12분)

8. 개회식 거행:

1) 국민의례: (사회)간사 황도익

2) 개 식 사:

3) 식 사: (의장)

4) 고 사: 목포시장, 도지사(대독 부시장)

5) 축 사: 시선거위원회위원장, 해군사령관, 경찰서장, 강선명

6) 의원선서: 金八用의원 낭독

7) 만세삼창: 의장선창

8) 폐 회 식

9. 보고사항:

※ 발의안 접수상황: 劉正斗 의장

10. 의사일정:

- 1) 제 1일(5월 5일) 일정의사: 시장 선거는
제 3일(5월 7일) 일정의사: 2항으로 가결
- 2) 제 2일(5월 6일) 일정이하는 원안가결
- 3) 의사일정 수정 표결상황
- 4) 수정안건(3), 시장선거
 - (1) 제1차 원안동의 陳福春: 재석 21명 가 6명, 부결
7일로 개의 李在洪: 재석 21명 가 9명, 부결
12일로 재개의 林一男: 재석 21명, 가 5명, 부결
 - (2) 제 2차 5분간 휴회 동의 金采庸: 재석 21명, 가 7명, 부결
원안대로 개의 陳福春: 재석 21명, 가 10명, 부결
후일로 재개의 金南鎭: 개의 및 동의 부결로 가결
 - (3) 휴회(5분간 동의) 金南鎭: 재석 21명, 가 21명 가결

◇ 휴회선언: 劉正斗의장 (오후 4시)

◇ 속회선언: 劉正斗 의장 (오후 4시 7분)

※ 金采庸의원 불참

- (1) 제 3차 7일로 재개의 표결: 재석 20명, 자 19명, 가결
6일로 개의: 취소
- (2) 제 4차 기타는 원안대로 동의 표결: 재석 20명, 가 20명 가결

11. 방청권 발행의 건: 劉正斗 의장 발의

- 1) 일반분은 의원 1인당 2매씩 익일분을 전일 오후에 배부할 것
- 2) 보도기관분은 지방신문은 2매, 기타는 1매 정도로 조절할 것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三星, 林一男의원을 지명

- 산회선언 (오후 4시 3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5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三 星

”: 林 一 男

作成者 書記: 高 光 洙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판남, 김홍진(세종식 속기)

(오 전)

◇ 朴贊圭의원

-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제1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 陳福春의원

- 아무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선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의원이 21명인만큼 발언권을 주어 한사람 한사람씩 구두호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金南鎭의원

- 선거방법에 있어서 구두호천을 한다는 것도 막연한 일입니다.

◇ 朴贊圭의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劉正斗의원

- 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구두호천과 무기명 투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후자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朴贊圭의원

- 의장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金南鎭의원

-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양단간을 지명하여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 朴贊圭의원

- 그러면 여기에 구도호천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법조 규정대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李小圭의원

- 전국적으로 시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시의회 규칙 제7조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제7조 낭독은 생략함)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진행시켜 주십시오.

◇ 朴贊圭의원

-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선거구 당선의원으로부터 시작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林一男의원

- 사회! 개표시 의원 두 명을 사회자로부터 호천하여 입회 하에 개표하여 주십시오.

◇ 朴贊圭의원

- 의원 두 명을 구두호천으로 입회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 金三星의원

- 아직 규정에도 없고 그런 일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간사와 서기로서 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朴贊圭의원

- 개표시 의원 두 명을 입회시키자는 것과 임시 간사와 서기로 개표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金永完의원

- 의장! 서기는 누가 선출합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黃道益

-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지방 상부기관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劉正斗의원

- 시의회 제7조에 규정한 무기명 투표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비밀 투표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신중을 요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임명한 서기만을 입회시킨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두 명을 선출하여 입회하기로 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朴贊圭의원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명합니다.

金南鎭의원, 文宅鎬의원 두 분 나오셔서 입회해 주십시오.

(투표시작: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0시 55분까지)

◇ 朴贊圭의원

- 유효표수 21표 중 劉正斗의원이 12표, 金采庸의원이 9표입니다.

의장으로서 劉正斗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 鄭應杓의원

- 부의장 선거도 전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朴贊圭의원

- 부의장 선거도 전례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

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金三星의원부터 선거를 하여 주십시오.

(투표: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 15분까지)

◇ 朴贊圭의원

- 투표는 끝났습니다.

개표에 있어서 의원 중에서 입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시 간사와 서기로서만 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鄭應杓의원

-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례대로 하여 주십시오.

◇ 朴贊圭의원

-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전례에 쫓아 개시하기로 하고 두 의원을 입회하여
가지고 개표하자는 제의입니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金三星, 林一男의원 두분 나오셔서 입회하여 주십시오.(개표 시작)

◇ 朴贊圭의원

-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투표수가 21표, 그중 李小圭의원이 11표, 文宅鎬의원 7표, 金采庸의원이
2표, 吳世一의원이 1표입니다.

李小圭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취임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제가 劉正斗입니다.

과반 4월 25일 시의원 선거에 있어서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로써
제 1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본인이 21명의 선출된 의원 중에서 의장의 중책을 맡음에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신중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없이는 도저히 민주주의 정치를 해나갈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의가 중앙에 상달되지 못하고 상부가 하부로 시달하는 일이 시달되지 못하였으므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시의회는 13만 명의 목포시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을 조정하고, 시장은 경찰서장을 조정하며, 상금 관청과의 긴밀한 연락을 하여 가지고 앞으로는 관료주의, 독선주의가 아닌 13만 명의 민의를 반영하여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정한 민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의를 무서워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13만 명의 주민 앞에서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실천하도록 21명은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명 제공들이 지시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대로 충실히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의장의 중책 이행상 잘못이 있다면 따뜻한 우애에서 충고하여 주시면 감사히 받겠으며, 진리를 위하여 전진할 때에는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서로 굳게 단결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박수)

◇ 李小圭 부의장

- 본시 소생은 여천 미약하고 사회에 하등 존재가 없는 한 청년으로서 3선거구에서 당선되고 또 다시 여기서 부의장이란 어마어마한 중책을 가지게 되었는데, 연령으로나 상식으로 보아서 선배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이 민주적이니 만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책임감을 명심하여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없고, 전역량을 다하여 목포시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 여러분과 의장을 받들 것을 맹세하여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박수)

◇ 총무과장

- 오후 2시부터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휴회하겠습니다.

(오전 12시 산회)

(오 후)

◇ 劉正斗 의장

-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식사

- 역사적인 목포시의회 개회식을 관계 각 지방장을 비롯한 지방유지 다수 참석 하에 거행하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나라 자산이라는 사람이 말한 바에 의하면 한 나라의 정치조직은 그 나라의 흥망 상태를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건전한 헌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썩어들어 갔으며, 명량한 민주는 우울해지고 민생 또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제도상 결함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료적이며,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책은 13만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지방실정을 중앙에 상달하지 못하고 중앙과의 연결성을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즉 혈액순환이 원만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균을 근치하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입니다.

우리 21명 의원들은 13만 명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원조가 있을 것을 바라며, 저는 역사적인 커다란 이 기회에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문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원 21명은 일치 단결하여 공동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산적된 목포시 행정사무를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들의 논쟁은 민의를 상부에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하등 감상적 사리사욕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행정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표리일치를 도모하며 상호 관계를 협조하여 발전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히 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관공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공동명령을 각기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시내 각 관계 기관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가 상급 관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항상 민의에 입각한 중요정책을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지시를 시 행정에 반영시켜서 시 행정을 올바르게 해 나감으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중요 토대는 서는 것이며, 우리의 시행정 기초가 서고 우리 국가기반이 서며, 자손만대에 행복을 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입석하여 주신 지방 유지와 언론계 여러분들이 시 발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주로 정상궤도에 서게 되면 시발전 향상과 국가토대가 확립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장은 민주정책을 시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후로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시 행정, 우리 국가민정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식사로 가름하겠습니다.

◇ 朴在祐 시장 고사

- 원고 지참 낭독하였음

◇ 도지사 고사

- 원고 지참 부시장 대독함

◇ 목포 선거위원장

- 에- 오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거룩한 시의회 개회식에 참가하고 또 겸하여 이 자리에 설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거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그 선거가 기본인 것입니다.

국가 책임자라든지 그 외의 단체에서 주권자를 선출하는 것을 과거 소규모의 독선주의자가 지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될 것입니다. 국가정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부 자유스러운 기분에서 자기의 의사대로 대다수의 의원을 선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을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금번 획기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목포에서도 이번에 다수의 입후보자 중에서 13만 명이 되는 시민이 심사한 결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어 오늘 이 개회식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목포시와 국가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제가 목포시선거위원회 위원장이란 명목만 가지고 아무 역할 하는 것 없습니다마는 우수한 선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각 관계 기관장 유지 여러분께서 원조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목포는 해방이후 여러 가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러분께 금후 목포 살림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새삼스러이 부탁할 것은 여러분께서 목포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원래 할 줄도 모르지만 이상 몇 마디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 목포해군경비부 사령관 축사

-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지방자치 선거를 가장 원만히 사고 없이 마치고 오늘 성스러운 목포 제1회 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쌍 영광으로 생각하며 13만 목포 시민여러분을 축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시장님을 비롯 도지사님 또한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저 보다 좋은 축하 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한마디,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아직까지 다소 지연되었지만 우리나라 기본정책의 첫 단계인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즉 지방자치란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구성하는 첫 단계로써, 국회는 상당한 연한을 통하여 시의회보다 전진하였지만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 시의회는 의원 여러분들이 목포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이 열쇠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진실한 대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 남기고 축사를 가름하는 바입니다.

◇ 목포경찰서장

- 원고 낭독으로 생략함

◇ 姜善明 축사

- 의장, 의원, 내빈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2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그간 13만 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켜 명예스러운 당선을 보고 오늘이 자리 독립국가로서의 포부와 역사적인 개회식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인은 이 지방자치법을 4년 전에 국회에서 수십일 동안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완성시킨 2백 명중의 일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도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제반 사정으로 못하고 전란도중에 이 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진국인 우리 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민주주의를 모방도 하였고, 혹은 창의도 가하여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원칙은 한 가지, 시민을 위한 정치, 즉 '호아다 피유필'(for the people)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포에 아직 산적된 미결문제로 하여금 여러분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13만 시민을 위한 13만 시민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양어깨에 중책이 걸려있고 여러분의 일거 일발은 목포의 사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장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과반 국회에서는 거수를 할 때 옆과 뒤를 보고 손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21명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목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거수를 하는 부정결한 거수는 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3만 시민의 생활상 발전과 도시 부흥과 민의를 수습하여 목포시를 명랑하게 만들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통계상 실지적인 면에서 나온 이론을 세워 주셔야하지 일반적인 추상을 가지고 가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목포에 한 시설을 하여야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설비를 하는데 무엇이 얼마얼마 들고, 하는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국가적이나 모든 예산을 고찰하여 가면서 세워진 어떠한 원조기관을 의뢰하는 이론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맺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목포에서 다소 일을 볼 때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이 문제를 정식 문제화시키고 어디까지 연구하고 어디까지나 결론을 가하여 온 것입니다.

5~6년 전부터의 목포시 모든 사업이 지금 여러분 앞에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가지를 하려면 적어도 3년, 4년, 5년이나 걸립니다. 이 장시일을 두고 차근차근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개회 날로 여러분을 축하하는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 는 것이며, 임명된 모든 운동을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저로서 한 말씀 부탁하는 것은 통계에 기인한 이론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시장선출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5월 7일에 시장 선거를 하자는 제의와 예정대로 오늘 하자는 반대 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林一男의원

- 여기까지 실정을 보면 모 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자기들 의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후보하였을때 누구보다도 진정한 민의를 반

영시키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여야 할 문제, 즉 목포발전과 목포시를 책임지고 좌우되는 시장선거이니 만큼 14일로 연기 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또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金南鎭의원

- 방금 林一男 의원의 말씀에 한가지 첨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14일로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14일까지 연기시킨다는 것은 시민에 대하여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것은 도의원 선거 때문에 8일부터 12일 까지 휴회로 들어가게 되므로 휴회 전에 하느냐 휴회 후에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13일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文吉의원

- 이제 방금 金의원으로부터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12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 李在洪의원

- 시장 선거는 14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시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너무 시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2일을 연하여 7일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오늘 시장 선거를 하자는 한과, 두 번째 5월 7일에 하자는 것과, 셋째 5월 12일, 제4안 5월 14일 시장 선거를 하자는 네 가지 안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李福柱의원

- 의장! 아까 7일로 밀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다른 안에 대하여 동의, 재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林一男 의원

- 시장 선거에 있어서 신중히 연구해하기 위하여 14일로 하자는 것보다 12일로 하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선거하자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나는 찬성이 아닙니다. 세어보기 위해서 섰습니다.

文宅鎬, 鄭應杓, 金三星, 陳福春, 金慶禧 이상 5명입니다.

그러면 7일로 연기하자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7일 문제를 특별히 동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 선거는 한번 결정하면 4년간을 좋으나 나쁘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한다면 4년간 13만 시민의 민의를 반영치 못할 것으로 우리 21명의 의원은 할복자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일이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신중을 기하여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采庸의원

- 의장! 의사일정에 관하여 저의 의견으로서는 오늘 예정한대로 단행할 것을 취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거 된지 10일이라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한에 숙고를 하여 시장 인물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고 더욱이 13만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21명은 선거전부터 시장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이라고 생각합니다. 숙고기간 10일간은 넉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일자대로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제 2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5월 7일에 선거를 하자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林一男,李文吉,李在洪,金永完,金京炫,劉正斗,朴贊圭,金吉煥,金八用 이상 9명입니다.

그러면 제 3안으로 5월 12일에 결정하자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鄭應杓,金南鎭,李福柱,金子洪,吳世一.

결국 표결을 보면 5월 7일에 시장 선거를 찬성하는 분이 9표, 그리고 12일에 하자는 표가 5표, 5일에 하자는 표가 6표입니다.

따라서 5월 7일에 하자는 표수가 9표로서

◇ 吳世一의원

- 표수가 안 맞습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제가 기권하였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시장 선거는 5월 7일로 결정합니다.

◇ 林一男의원

- 과반수가 넘지 못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金采庸의원

- 내 생각은 당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장선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결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5분간 휴회할 것을 긴급제의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金子洪의원

- 의장! 그러면 시장 될 인물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낮음)

◇ 劉正斗 의장

- 제 2안, 제 3안 모두가 과반수가 못되기 때문에 폐기합니다.

새로운 안으로 5분간 휴회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金京炫의원

- 5분간 휴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몇 분이 되었다고 휴회를 합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 金吉煥의원

- 7일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一男의원

- 제가 내일 시장 선거를 하는 것을 제의한데 대해서 토론할 것을 제의합니다.

◇ 明南喆의원

- 5분간 휴회를 하였다고 해서 옥신각신 떠들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목포를 팔아먹을 시장을 선출하겠습니까?

끝까지 신중을 기하지 못하면 4년간 유감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明南喆의원

- 5분간 휴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막연히 다른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5분 동안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5분간 휴회하는데 동의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金三星, 吳世一, 金采庸, 金南鎭, 李在洪, 金永完, 朴贊圭 이상 7명입니다.

이상 7명으로 휴회하는 것은 부결입니다.

시장 선거일자에 대하여 무슨 좋은 안이 있으면 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南鎭의원

- 다른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휴회도 안 된다, 연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明南喆의원

- 의장! 의사일정을 묻는 것보다도 오늘 하느냐, 후일 하느냐를 표결하여 주십시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金南鎭의원

- 막연한 발언은 취소하여 주기 바랍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오늘 하느냐, 후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6표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 의원은 오늘 말고 2일을 연기하면 사바사바니, 정상배가니 하는 모독한 말씀을 합니다.

시장선거는 오늘 하느냐, 다른 날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오늘 시장 선거를 하느냐, 다음날 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오늘 시장 선거를 하자고 하는 분은 서 주십시오.

金三星, 吳世一, 陳福春, 金采庸, 明南喆, 文宅鎬, 朴贊圭, 金吉煥, 金永完, 金京炫 이상 10명입니다. 과반수가 못되기 때문에 오늘 하자는 것은 안됩니다.

의사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휴회하게 되었습니다. 8일 안에는 도의원 선거 연속회의를 열고, 9일날 투표소를 23개소에 설치하여 10일날 투표하고 11일, 12일 양일간에 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은 하루 쉬어야 한다고 해서 이

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林一男의원

- 시장 선거 문제에 있어서 오늘 하느냐, 다른 날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다른 날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일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5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막걸인이 무어라고 장내 소란)

◇ 劉正斗 의장

- 5분간 휴회를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11명으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文宅鎬의원으로부터 부의장에게 그런 언사는 취소하라하자 장내 소란)

◇ 劉正斗 의장

- 지금으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 朴贊圭의원

- 의장! 시장 선거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그 동안 옥신각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일 동안 더 연기하여 7일로 시장 선거 의사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金南鎭의원

- 이제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골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3일을 더 연기하여 8일로 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지금 8일로 하자는 동의를 있었는데

◇ 陳福春의원

- 의장! 내일로 하여 주십시오.

◇ 金南鎮의원

- 다수가 7일로 찬동하므로 8일을 취소합니다.
7일을 동의합니다.

◇ 陳福春의원

- 나도 내일로 하자는 것을 취소합니다.

◇ 劉正斗 의장

- 7일로 하자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 文宅鎬의원

-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13만 시민이 확고부동한 커다란 기대 속에 시장 선거를 하는데 한달 동안만 연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적절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7일이라는 동의가 있고, 또 한달 동안을 연기해 달라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7일로 결정하자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2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 金三星의원

- 8일부터 13일 까지 휴회로 들어간다는 데 대하여 도의원 서거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원안대로 하자는 제의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실행한다는 것에 별 이의가 없으시다면 반대하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2일 5월 6일은 원안대로 예산통과, 제 3일인 5월 7일은 처음으로 시장 선

거를 하고 두 번째 보고서 낭독입니다.

원안대로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제 3일 5월 7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보고서 낭독이 끝나고, 시장 선거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 회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방청권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청권 발행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의원 1명에 방청권 2매씩 주고 출입기자 22명에 대하여 출입기자증을 발행하여 함께 64매를 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 陳福春의원

- 목포시민의 대다수가 들어와 자기가 선출한 대변인이 할 말을 다 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방청권을 많이 발행하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黃道益

- 가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13만 시민들이 선출한 대변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사당 관계로 보시다시피 복잡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 의사당이 완성되면 더 많은 방청객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在洪의원

-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청권을 주는데 있어서 내일 의회 것을 오늘 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복잡성을 덜 이룰 것 같습니다.

◇ 李福柱의원

- 방청권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되도록 앉아서 방청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의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 회의실에 있는 의자는 전에 관계 청이나 동장들이 모여 회의했던 것이니 만큼 의자도 겨우 동장들이 앉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의자를 뺏어올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 지금 의자를 만드는 중입니다. 앞으로 며칠만 기다리면 의자가 완성되어 앉아 방청하게 될 것입니다.

◇ 金八用의원

- 아까 방청권에 대하여 2매 정도로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중요한 시장선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복잡성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니 만큼 앞으로 3매 정도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南鎭의원

- 2매니, 3매니 하는 것은 시 당국에서 적절한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방청권에 대하여는 금일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 劉正斗 의장

-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방청권을 발행하는데 한의원 앞에 2매씩 할 것과 내일 것을 앞날에 발행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입기자증이올시다.

지방신문은 여섯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지사 15개소, 합해서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방 신문사는 목포일보사, 전남일보사, 호남일보사, 광주일보사 등으로 가장 활동 범위가 넓으니 만큼 출입기자증은 2매씩, 그 외의 신문사는 한 장씩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陳福春의원

- 방금 경제통신이 빠졌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넣어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지방 신문으로는 목포일보, 전남일보, 호남일보, 광주일보, 합동통신, 대한통신의 여섯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언론계로서 시사통신, 경제통신, 무역통신, 서울신문사, 연합신문, 국제신문, 현대신문 등입니다.

◇ 陳福春의원

- 경제통신은 목포에서 가장 활약이 많은 통신인만큼 두 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金京炫의원

- 신문기자석에 신문 중 오지 않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좀 달라고 합니다. (기자 왈 신문사중에는 신문이 오지 않은 신문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6개는 출입기자증을 2매씩 드리고 나머지는 1매씩 드리기로 하였는데 경제통신사에 1매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 당국에 맡겨 적당히 하되 오늘 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은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 5시 산회)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2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5월 6일 오전 10시 20분

2. 장 소: 목포시청 회의실(임시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8명

劉正斗, 李小圭, 金三星, 林一男, 金南鎭, 金吉煥, 金八用, 李在洪,
朴贊圭, 吳世一, 金永完, 鄭應杓, 金子洪, 李福柱, 陳福春, 李文吉
明南喆, 金京炫

2) 불참의원: 3명

文宅鎬, 金采庸, 金慶禧

4. 개의선언

劉正斗 의장

(오전 10시 20분)

5. 보고사항:

1) 제 1차 회의록 보고: 간사 낭독

6. 토의안건:

1) 회의규칙(제 1독회)

※ 劉正斗 의장과 李小圭 부의장이 사회를 교체

(1) 토의방법: 전체낭독을 생략하고 개별토론으로 가결

(2) 수정사항: ① 제 2안중 「간부」를 「간사」로 정정

② 제 7조 3항을 「투표는 의회에서 결의를 득한 의원 2명이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로 정정

※ 陳福春 의원 퇴장

(오전 11시 15분)

- (3) 제 1독회를 종결하고 제 2독회로 넘길 것을 가결
2) 시의회 위원회 조례(제 1독회)
(1) 토의방법: 부의장 조례안 낭독
(2) 제 1독회 종결가결: 재석 17명, 가 9명으로 가결

※ 李小圭 부의장과 劉正斗 의장이 사회를 교체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南鎭, 金吉煥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전 11시 4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6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南 鎭

”: 金 吉 煥

作成者 書記: 高 光 洙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2차 회의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판남, 김홍진(세종식 속기)

(오 전)

◇ 劉正斗 의장

- 지금으로부터 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적 18명 출석하여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마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시민이 이 회의를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엄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코리아 타임이라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사람에 대해 시간관념이 희박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사당은 어디까지나 원만성과 원활성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견을 내놓아 의사를 결정하는데 너무 열의가 넘친 나머지 야비한 언사로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므로 여러 방안을 고려하여 어디까지나 의사당의 원만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지금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기록문 낭독

◇ 劉正斗 의장

- 기록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안 제 1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 규칙 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8장 제 81조로 된 상당한 장문의 규칙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26조(제 26조 낭독) 중 의회 독회를 개시한다는데 준하여 지금으로부터 제 1회 독회를 개시하겠습니다.

◇ 金永完의원

- 제 2조에 가서(제 2조 낭독함) 간부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劉正斗 의장

- 부의장(부의장 나오고 의장 들어갔음) 발언

◇ 李小圭 부의장

- 말씀하십시오.

◇ 劉正斗 의장

- 제 26조에 보면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해 낭독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 질의응답 정도로 끝내고 의안 낭독을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방금 劉正斗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 1독회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읽어서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제 26조에 규정된 의안 낭독과 대체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을 비롯한 토론 정도로 그리고 전체적인 낭독을 생략하자는 안입니다.

◇ 金永完의원

-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 李小圭 부의장

-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각 의원께서는 수정할 점을 지적하여 토론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 金永完의원

- 제 2조에 의회 간부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이 간부는 어떠한 문제를 간섭하는 간부인가? 어떤 사무 일을 보는 간부인가?

이 글자는 모든 것이 부적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간부를 간사로 고친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현재 우리로서도 이것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회 의장이라든지 국가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선거가 끝난 후 간부가 있다고 보는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이것을 간부라고 지명하고 선거가 끝난 후는 시장에게 등록을 하게되고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의회간부에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라는 것은 의회 구성 전에 시 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金永完의원

-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위원회는 당선된 후는 간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간부가 안되고 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여 봅시다.

한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현상이니 만큼 지금 이 규칙 안이 통과하면 몇 십년, 몇 백년, 가도 그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이 규칙 안은 의회 간부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 당시 실정에는 맞지 않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여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金永完의원

- 물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小圭 부의장

- 金永完의원으로부터 규칙에서 간부라는 모순성을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즉 간부를 의회에서는 간사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제의입니다.

가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金南鎭의원

- 10조에 의회 간부와 서기는 과장이 명하여 그 사무에 취한다는 조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간사와 과장이 명하여 취임케 한다고 고쳐 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제 10조에 의회 간부와 서기는 과장이 취임케 한다는 조목이 있다니 간사로 고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 李在洪의원

- 재청입니다.(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 李小圭 부의장

-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칠 것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 李在洪의원

- 제 9조에 임시의장 선거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임시의장이니 만큼 임시의장을 내세우는데 있어서는 물론 무기명 투표도 좋지만 최고령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劉正斗 의원

- 제 9조에 임시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점자가 임시의장이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추어 임시의장도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대다수의 득점자를 임시의장으로 한다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최고 연령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자는 안과 의원 전체의 의사대로 무기명 투표의 원안 그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개의 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의 안 원안대로 할 것을 결정합니다.

◇ 陳福春의원

- 자치법 21조에 (21조 낭독) 이것을 3일전으로 고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떤 의원이 출장 가서 그 전일 통지가 안되면 참석 못하는 의원이 생기게 될 것이니 3일전에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 金八用의원

- 자치법 제 20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나 서울시는 7일, 시·읍·면은 5일전이라고 뚜렷이 있습니다.

◇ 劉正斗 의원

- 제 6조 자치법 제 20조 3항의 단항에 있어 3일전까지 공시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그 5일전, 급히 소집하려고 하는 때는 그 전일로 되어 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陳福春의원의 3일전으로 고쳐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21조에 서울특별시는 7일전, 시·읍·면은 5일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개의 안입니다. (개의 안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 없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金永完의원

- 제 7조에 투표는 서기가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기라는 것은 지명하여야 어디까지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분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인데 서기에 의하여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劉正斗 의원

- 개의 안입니다.
투표는 서기가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합니다.

이 규정은 의회에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는 의장입니다.

이 사회자라는 것은 단지 회의를 추진시키는데 한 기관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진공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기라고 관청에서 공무원으로 취임된 임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서기가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는 개의 안에 이의 없습니까?

◇ 鄭應杓의원

- 제 7조 2항에 서기가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은 서기가 점검하더라도 임시의장이 출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칙 자체로 볼 때 관료적인 감이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를 점검할 때 2명의 입회인을 의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수정 재개의 안입니다.

◇ 金永完의원

- 투표 점검은 의회에서 결의를 준한 서기가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金南鎭의원

- 서기를 수정하여 의회에서 결정을 득한 의원 2명으로서 점검케 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陳福春의원

- 의원 2명으로서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찬성입니다.(재청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 7조 2항에 투표하는 서기가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 2명으로 점검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 陳福春의원

- 제 12조에 산회, 개회, 회중지는 의장이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회의 도중 의장의 의사대로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면 의원들에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포할 때는 재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선포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제 3장 제 12조에 있는 의장의 선포는 독재적이니 재석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된다는 수정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원

- 개의 안입니다.

모든 새회, 산회,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하여 의장의 권한이라고 극단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산회나 개회, 회의중지를 어떤 그 혼란상태 등을 수습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있는 책임상 권한이지 의장 개인적인 의사로 하는 것은 아니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 林一男의원

- 제 3장 제 12조 문구에 있어서는 수습 곤란시나 또한 긴급상태에 이르렀을 때 산회나 휴회를 선포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합니다.

◇ 金京炫의원

- 동의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陳福春의원이 제의한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산회나 휴회를 선포하자는 안과 劉正斗의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입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 林一男의원

- 의장! 가부를 묻는 방법은 거수제로 합시다.

◇ 鄭應杓의원

- 회의 진행상으로 보아 동의와 재청이 있는 안부터 묻고 다른 안은 다음에 물어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네. 그러면 劉正斗 의원의 원안 그래도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11명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둘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陳福春의원

- 陳福春의원은 의견이 합의 안되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일어서 퇴장)

◇ 李小圭 부의장

- 안녕히 가십시오. (웃음소리 들림)

◇ 劉正斗 의원

- 회의 규칙 안은 모두가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이 규칙 안은 관료적인 것이 아니고 비 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헌법정신에 기준 하여 민주주의적인 회의 규칙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 2독회로 회부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劉의원이 제의한 것은 이 회의 규칙 안은 모두가 헌법정신에 기준 한 것이니 이만한 정도로 하고 제 2독회로 회부하자는 안입니다.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 鄭應杓의원

- 의사결정을 본다면 5월 15일에 위원회 위원선거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회의니 제 1독회, 제 2독회니 하느니 본회의에서 검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5월 15일 위원회 위원선거가 있으니 잘 보면서 전체 위원회 검토 토의하여 수정하기 위하여 본회의 회부하자고 한 것을 생략하자는 안입니다.

◇ 劉正斗 의원

- 제 1독회에서 규칙안 전체를 제 2독회로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2독회에서 축조수정을 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제 1독회에서는 제 2독회에 회부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李小圭 부의장

- 축조토의는 제 2독회에 가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고 제 1독회 토의를 주로 하고 제 2독회에 회부하여 토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 劉正斗 의원

-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낭독을 생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金永完의원

- 물론 시간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불가능, 가능 모든 점을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검토하

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시간상 관계로 낭독을 생략하자는 안과, 의견의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일일이 검토하자는 안입니다.

◇ 劉正斗 의원

- 아까 동의에 참가합니다.

토론이나 수정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한 조목 한 조목 하자는 안입니다.

◇ 金三星의원

- 개의 안에 찬동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목포시 위원회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낭독)

◇ 劉正斗 의원

- 조례안은 현재 제 1독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조목 한 조목 제 2독회에 들어가서 시 위원회 조항이 필요한가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본시 조례 안은 제 1독회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조례 안이 필요한가를 느꼈을 때 제 2독회를 가져가는 것이니 만큼 오늘 제 1독회에서 목포시 위원회 조례 안의 필요성이든가, 토론을 개별적으로 또는 축조적으로 하자는 것을 제 2독회에 가서 하자는 것인데 전체적인 각 위원회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발표하여 대체적으로 이 제 1독회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林一男의원

- 제 3조에 상임위원회는 2명, 내무위원회는 9명, 산업위원회는 5명, 문교보

건사회위원회는 7명, 징계자격위원회 5명, 전부 26명인데 우리 목포시 의원은 21명밖에 안되므로 의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李在洪의원

- 거기에 대하여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단, 징계자격위원은 겸할 수 있다고 제 6조에 있습니다.

◇ 李文吉위원

- 목포시는 특히 상공도시이니 만큼 산업위원회는 5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 중에서 2명만 산업위원회로 붙이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내무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2명을 산업위원회에 보내자는 제의입니다.

◇ 金永完의원

- 내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내무위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사회위원회 7명중 2명을 산업위원회로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福柱위원

- 문교사회위원회를 5명으로 삭감하고 2명을 산업위원회로 붙인다는 안이 있는데 지금 문교, 사회, 보건에 관한 3가지는 중요한 것으로 현실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문교, 사회, 보건에 종사하는 분은 7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 있어서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재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많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명을 삭감하지 않을 것을 제의합니다.

◇ 金京炫의원

-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쉽게 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우리 역량 여하에 달려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 金永完의원

- 이번 선거사무를 보는데 명부 정리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만큼 내무위원을 삭감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산업위원회 대하여서도 5명 정도로 할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의 항만시설도 여하튼 활약을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또 의견토론에 참고되는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원

- 상임위원회는 전수에 대해서 의장이 그러는데 제 4조 분과위원회를 지명하는 규정입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하여 제 2독회가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고 제 2독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一男의원

- 제 1독회니 만큼 낭독하고 의심나는 점을 질의응답 정도로 그치고 제 2독회 들어가서 수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李小圭 부의장

- 전체적으로 중요한 모순성만을 검토하고 축조 조항은 원안대로 두고 제 2독회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조적으로 좋다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9명입니다. 재석 인원 17인으로 과반수가 되니까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의장 자리로 돌아감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를 목포시 규칙안 제 1독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제 1독회는 오늘 예정대로 의사진행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박수)

(오전 10시 20분 시작, 오전 11시 40분 산회)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3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5월 7일 오전 10시 8분

2. 장 소: 목포시청 회의실(임시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9명

劉正斗, 金三星, 林一男, 金南鎭, 文宅鎬, 金吉煥, 金八用, 李在洪,
朴贊圭, 吳世一, 金采庸, 金永完, 鄭應杓, 李文吉, 金子洪, 李福柱,
陳福春, 明南喆, 金慶禧

2) 불참의원: 2명

李小圭, 金京炫

4. 개의선언 : 오전 10시 8분

5. 보고사항:

1) 제 2차 회의록 보고(서기 강선철 낭독)

6.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시장선거

3)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1독회)

4) 회의

7. 보고사항:

1) 시장선거

2)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1독회)

3) 회의규칙(제 2독회)

8. 토의안건:

1) 시장선거

※ 긴급동의 성립: 방청권 무제한으로 개방회의

※ 李小圭, 金京炫의원 참석

(1) 투표방법: 단기 무기명 투표

(2) 개표방법: 의장지명의 감표의원 2명 입회, 金吉煥, 陳福春

(3) 개표상황

후보자명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	당락구분
朴在祐	3	6	11	當選
徐良鳳	2			
金永春	7	9	10	
朴英山	5	4		
千篤根	1			
金壽男	1			
丁龍會	2			
李根彰		2		
計	21 票	21 票	21 票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차 회의의 의사일정 중 3, 4항은 차회 회의로 연장 가결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文宅鎬, 金八用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산회선언

(10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7일

議長: 劉正斗

議員: 金三星

”: 林一男

作成者 書記: 高光洙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3차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관남, 김홍진

◇ 劉正斗 의장

- 출석인원 18명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 林一男의원

- 의장! 지방자치제 실시와 또한 민의에 의한 시장을 처음 선출하느니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전 시민이 이목을 집중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권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경찰의 경비를 엄중히 하되 방청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다수 시민을 방청시켰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입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 임일남의원으로부터 처음 민의에 의한 시장을 선출하는 만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방청권 없이 개방하여 전부 방청시키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이의 없습니까?(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개방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서기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낭독)

지금부터 시장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선거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지방자치제의 관계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지사과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선거는 재석 인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의원에게, 3분의 2 이상의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제 1차에 3분의 2가 못되는 경우에는 제 2차로 들어간다.

이 제 2차에서도 3분의 2이상이 못될 때에는 제 3차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3분의 2 이상의 득점자가 없을 때에는 그중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

이상과 같이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는데 투표 순서에 있어서는 제 1선거구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이 차례 차례로 하여 주십시오.

◇ 鄭應杓의원

-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순위는 법규 그대로 하되 의원 중에서 의장이 2명을 지명하여 이 2명으로 하여금 감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케 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개표를 하는데 투표의 공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의원을 감표 인으로 입회시키자는 안입니다.(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명하겠습니다.

金吉煥, 陳福春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金三星의원으로부터 차례차례 나와 투표하여 주십시오.(투표시작)

지금부터 개표하겠습니다.

참관인으로 지명된 金吉煥의원, 陳福春의원 나와 주십시오.(개표시작: 10시 30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在祐: 3표, 徐良鳳: 2표, 金永春: 7표, 朴英山: 5표 千篤根: 1표, 金壽男: 1표, 丁龍會: 2표, 합계 21표입니다.

재석 의원의 3분지 2가 못되므로 제 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2차 투표시작: 10시 32분), (개표 시작: 10시 38분)

제 2차 투표의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在祐: 6표, 金永春: 9표, 朴英山: 4표, 李根昌: 2표 합계 21표, 이번에도 3분지 2가 못됩니다.

제 3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투표시작 10시 42분)

제 3차 투표를 개표하겠습니다.(개표시작 10시 49분)

제 3차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在祐: 11표, 金永春: 10표입니다. (우렁찬 박수소리)

◇ 金南鎭의원

- 시장 선거도 끝났으니 다음 회의는 지연시키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 김남진 의원으로부터 중요한 일인 시장 선거도 끝났고 그 간 여러분들도 긴장되어 있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거수하는 사람 없음)

그러면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오전 10시 55분)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4차 회의록

1. 일 자: 단기4285(1952)년 5월 14일

2. 장 소: 목포시청 회의실(임시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20명

劉正斗, 金三星, 林一男, 金南鎭, 文宅鎬, 金吉煥, 金八用, 李在洪,
朴贊圭, 吳世一, 金采庸, 金永完, 鄭應杓, 金子洪, 李福柱, 陳福春,
明南喆, 李小圭, 金京炫, 金慶禧

2) 지참의원: 李福柱

(오전 10시 40분 참회)

3) 조퇴의원: 文宅鎬(오후 불참)

4.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위원회 조례안(제 2독회)

3)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2독회)

4) 회의규칙안(제 3독회)

5) 의석추첨

5. 제 3차 회의 의사 미진안건:

1) 의원비용 변상조례안(제 1독회)

2) 회의 규칙안(제 2 독회)

6. 시장 시정피력(취임인사)

※ 오전 10시 40분 李福柱의원 참석

7. 개의선언

(오전 10시 50분)

8. 도의회 의원: 洪益先 당선인사

9. 토의안건:

10.보고사항:

- 1) 임시간사 黃道益 낭독
- 2) 위원회 조례안: 제 2독회

※ 낭독 축조 심의키로 가결(임시간사 黃道益 낭독)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 목포일보 기사 시의회 스텝 취소를 의장께 요청(金采庸의원)

3) 비용 변상조례(제 1독회)

- (1) 의장 토의선언(긴급동의로 인하여 토의중지)

※ 긴급동의 성립: 긴급 양곡대책 강구(金京炫의원)

(2) 산업과장: 현시 양곡관계 설명

(3) 긴급 양곡대책 위원회 조직가결: 재석 21명 가 20명

(4) 실시 요강: 劉正斗, 金采庸, 金永完의원을 준비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
원으 로 하여금 복안을 작성, 내일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제안 가결
재석 21명, 가 14명

◇ 劉正斗 의장

- 휴회 선언

(오전 12시 55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14명 착석)

(오후 2시 55분)

1) 회의규칙: 제 2독회

(1) 토의방법: 낭독 축조토의(幹事 朴贊大 낭독)

(2) 수정조항: 제1조중 「개회식」을 「개폐회식」으로 정정

(3) 제 2조 중 「간부」를 「간사」로 정정

※ 오후 2시 35분: 陳福春의원 참석

※ 오후 2시 35분: 李文吉, 金三星, 李在洪의원 참석

※ 오후 2시 40분: 金八用의원 참석

(4) 제 30조 중 「기립」을 「거수」로 정정 가결

(5) 제 35조 중 「것은」을 「것을」로 자구 수정

(6) 오후 3시 30분 회의규칙안 축조심의(제 2독회) 완료선언: 의장

2) 의석추첨

(1) 추첨방식

(※ 의장과 부의장을 1석, 2석으로 두고 19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현 좌석 순위에 의하여 추첨기로 하며, 불참의원의 추첨은 서기(천세봉)가 대리 추첨기로 함)

(2) 추첨상황

1. 李福柱, 2. 明南喆, 3. 金三星 4. 金南鎭, 5. 李在洪
6. 陳福春, 7. 林一男, 8. 金京炫, 9. 文宅鎬, 10. 金八用,
11. 李文吉, 12. 鄭應杓, 13. 金慶禧, 14. 朴贊圭 15. 金吉煥,
16. 金采庸, 17. 金子洪, 18. 吳世一 19. 金永完

3) 긴급 동의안 성립:

(1) 식량 배급과 잡부금 징수와의 완전분리 요망

(2) 잡부금 징수여부를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징수케 하자는 동의: 鄭應杓 의원

(3) 보류 동의(金采庸의원): 가결, 재석 20명 중 가 16명

4) 단오절 문제토의

3인의 교섭의원을 정하고 의회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주최측 및 후원 측에 장 소를 교섭함과 동시에 단오절 축하대회 기간을 3일정도 하기로 가결

교섭의원 李小圭, 鄭應杓, 金京炫의원

재석 20명 중 가 14명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八用, 李在洪의원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4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14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八 用

”: 李 在 洪

作成者 書記: 高 光 洙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4차 회의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관남, 양종수

(오 전)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개회하겠습니다.
개회하기 전에 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朴在祐 시장 인사말씀

- (시장 인사말씀 생략) (박수)

◇ 劉正斗 의장

- 그럼 도의원에 당선된 黃益先씨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洪益先 인사말씀

- (인사말씀은 생략함) (박수)

◇ 총무과장 黃道益

- 보고사항 낭독(낭독은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낭독 중에 이의가 있으시면 묻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 陳福春의원

- 물론 시간관계상 낭독치 못할 것이오나 이 프린트가 잘 안 보이므로 낭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 陳福春의원이 프린트가 안보이니 낭독하여 달라함에 이의 있으시면 가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陳福春의원

- 물론 내무위원회는 이 중요한 내무에 대하여 산업양곡을 선결로 하지만 목포 상공도시의 중요한 문제는 상공위원회입니다.

21명 중 내무위원 7명으로 하고, 상공위원 5명, 7명을 5명으로 하여 상공위원회에 2명을 더 가하여 각각 7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동의하는 의원 있음)

◇ 林一男의원

- 다 좋은 의견이나 수가 적고 많고 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李小圭 의원

- 우리 목포시의회 조례 안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의회 의원의 조례는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가 20%로 전국적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가 20%, 산업위원회가 40%, 문교사회위원회가 40%로 전국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실이며, 우리 목포시 의원 21명 중 산업위원회가 6명, 문교사회위원회가 6명인데 산업위원회에서 1명을 제명하여 문교사회위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좋고, 5명과 7명으로 가부로 결정할 때 6명으로 하면 3대 3이라 곤란하오니 5명과 7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럼 토론은 그만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라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자 1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제 4조 낭독(내용은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제 5조부터 제 20조까지 낭독 중 의견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제 5조부터 제 20조까지는 전부를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이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金采庸의원

-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오늘 6월 14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목포시 조례 안 제 1독회는 마치겠습니다.

◇ 金采庸의원

- 의장!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6일 목포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의원선출 방법에 대해 李小圭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의 결점을 들어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의원들은 그제야 비로소 납득했습니다.

당시 李小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7조가 아니고 이 회의 규칙 안이라는 것을 그대로 발언한 모양인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 사소한 문제를 의원을 애긴다는 마음에서 되도록 이러한 발언은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의된 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대단히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당시 취재한 자가 모르고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없이 그 당시 취재신문 기사를 곧 호출하여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였음.(내용은 전술과 대동소이함)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 있음)

◇ 金京炫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방조례보다도 우리 식량문제가 급합니다.
목포시내에는 식량난으로 2, 3일만 더 지체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우선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배급토록 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였습니다.

◇ 金永完의원

- 방금 시장으로부터는 식량대책에 대해서 별다른 시책이 없으므로 자세한 실정을 듣기 위하여 시 산업계장을 이 자리에 호출하여 구체적인 식량대책을 들어보기로 합시다.(동의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음)

◇ 李小圭 의원

- 예- 사회 지위적으로나 연령으로나 여전한 제가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金采庸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5조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등의 모순성이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의원에 대해서 반박적인 의도가 아니어나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采庸의원

- 李 의원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발언이 아닌 신문기자의 취재가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 산업과장 金容俊

- 식량배급 대책에 대하여 언급한 그 내용은 원고지참으로 약함

◇ 金京炫의원

- 피난민 수배자가 만 여명이라고 하나 피난민 식량 수배장소에 가보면 비루도 치마나 또는 화장을 하였고 식량을 수배하여 뒤로 팔아 돈을 사는 피난민도 있어 원주민보다 나은 피난민도 있사오니 우리 의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시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의원에게 질문결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 金永完의원

- 시 산업과에서는 식량대책에 대한 시내 통계적인 계획과 숫자를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소방대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내용은 원고 지참으로 약함)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데 시 당국으로는 아무 안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산업과장 金容俊

-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 李小圭 의원

- 구체적 안도 없이 어떻게 하여 이 난관을 돌파하오리까?

앞으로 식량문제를 해소키 위하여 식량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金采庸의원

- 방금 李小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이 식량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원활을 기합시다.

유지로서 2명, 의원에서 2명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鄭應杓의원

- 지금 식량배급 실정을 보면 어업조합의 직원은 식량을 수배하는데 어획을 획득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하등 대책이 없음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 산업과장 金容俊

- 지금 식량문제에 관하여서는 시청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대하여 식량대책위원회를 조직코자 이미 준비되어 2, 3일이면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하여도 무방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선원에게 식량 배급이 없다는 것은 식량은 오직 중앙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므로 우리 시 당국으로는 방침이 없으며, 전반기에 도에 가서 2, 3차 절충을 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鄭應杓의원

-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차후 말씀드릴까 하였으나 이미 식량 문제의 말을 하였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목포일보의 광고에서 나왔듯이 5월 단오제에 삼학도에서 20여일 동안 각종 농악, 강강수월래, 씨름대회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식량사정을 볼 때 한 되, 한 홉이 새로운 이 때에 장소로 쓰기 위하여 보리밭 700평, 고추밭 백 평을 이용한다니 20여 일은 먹을 보리를 풀로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바 있으므로 여러 의원이 의견을 토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李福柱의원

-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특별대책위원회를 오늘 조직하여 내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의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 劉正斗 의장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시부터 개최하겠습니다.

(오전 12시 20분 산회)

(오 후)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했으니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 규칙안 제 2독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1조 1조를 낭독하면서 축조시키겠습니다.
간사가 낭독하였음(내용은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제 1조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金南鎭의원

- 제 2독회 때에 金永完의원으로부터 간부를 간사로 고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金永完의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金永完의원

- 시의원 선거전에는 간부라 하오나 선거 후는 간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金永完의원

- 지금 제 1회, 제 2회에서 간부, 서기 정정을 이 간부에서 설치하자는 것은 좀 애매하니까 간사라 하는 것보다도 의회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있어 앞으로 규칙을 통과하면 우리가 어느 때나 그대로 실시하며, 또는 시대에 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회도 말하자면 사무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우리가 출생계를 낼때 시장 앞으로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으로 내야하는 문제와 같으니 간사라고 결정지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金采庸의원

- 지금 의회에서 간부라 함은 간사라고 하며, 간부라 함은 의원의 임명 전의 말이며, 의원의 임명 후에는 간사라고 하여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朴贊圭의원

- 투표는 의회 결의안의 결과 21명으로서 정돈하여 사회자에게 보고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였음

◇ 金采庸의원

- 서기가 정돈해 가지고 온 투표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원칙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의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朴燦大 간사

- 제 8조부터 제 30조 까지 통과하였음

◇ 金采庸 의원

- 의원의 발언이 빈번할 것을 추측하였기로 기립할 것을 고치고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찬성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기립을 거수로 하는 것은 19명으로 통과하였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 朴燦大 간사

- 제 21조부터 제 81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하였음.(조목은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이로써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은 제 2독회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 추첨을 하겠습니다.
의석 추첨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봉투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이 제1선거구부터 차근차근 가지고
가셔서 자기 이름을 써 주십시오.

◇ 金南鎭의원

- 의장, 부의장석은 제일 앞에다 두고 그 외 의원만 하기로 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의회석 결정 순위(순위는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鄭應杓 의원

- 오늘 오전회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긴요한 것은 식량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내에서는 식량표를 가지고도 식량을 구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부금을 냄으로써 식량배급을 한다 하여 돈이 없는 사람은 못타고
있으니 잡부금은 그것대로 납부하고 식량은 식량대로 팔게 하시기를 우리
여러 의원이 토론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여 가부를 물었던 바 (가)20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 朴贊圭의원

- 오늘 아침에 시장께서 책임 있는 말 가운데 잡부금으로써 많이 배부되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20여종 되는 잡부금이 있는데 앞으로
는 이것을 할당 배부할 때에 의회에서 통과하여 배부토록 하기 위해 본 회

의에서 가결하여 주십시오.

◇ 鄭應杓의원

-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식량문제에 헤매이고 있는 이때, 5월 단오제를 삼학도에서 20일간이라는 장기간을 보낸답니다. 물론 상이군인의 후원 대책으로 시청, 해군경비부, 목포일보가 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보리를 먹을 것인데 풀로 베어 내버린답니다. 외국미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면적을 보면 보리밭 700평에서 보리가 14가마가, 고추밭 백평에 고추가 백가마가 나온다는 숫자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단오제의 놀이, 농악, 강강수월래, 추첨, 널뛰기, 씨름, 권투 기타 여러 가지 놀이의 장소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될 일이오니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고 기한을 3, 4일 정도로 하며 시의회에서 토론하여 3인의 위원을 조직하고 주최측과 후원당국에 교섭하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이 있음)

◇ 李小圭 의원

- 방금 말씀한 바에 나도 동의한 바 동시에 참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섭위원을 劉正斗의원, 金采庸의원, 金京炫의원 이상 3인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 가부를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자 9명이므로 과반수 이상이 못되어 부결되었습니다.

◇ 李小圭 의원

- 교섭위원 3명은 의장에게 일임을 맡기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동의한다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자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陳福春 의원

- 여기에 대한 교섭위원은 방금 5월 단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鄭應杓의원, 李小圭 의원, 金京炫의원 3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자 재석 의원 21명중 14대 7로 가결되었습니다.

◇ 시 직원

- 이것은 사적인 말씀 입니다마는 야간의 통행증 발생상 증명용 사진 3매가 필요하오니 16일까지 3매씩을 시 당국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陳福春 의원

- 그것을 만들과 동시에 우리 뺏지도 하나씩 만들시다.
어느 신문사에 현상모집을 하여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 劉正斗 의장

-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 28분 산회)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5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5월 15일 오전 10시 20분

2. 장 소: 목포 시청 회의실

3. 개의성립:

1) 참석인원: 21명(전원참석)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文宅鎬,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4. 의사일정:

5. 보고사항:

- 1) 위원회 조례안(제 3독회)
- 2)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3독회)
- 3) 각 분과위원회위원 선거
- 4) 각 분과위원회위원장 선거

6. 제 4차회의 의사미진안 건

- 1)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1, 제 2독회)
- 2) 회의 규칙안(제 3독회)

7. 개의선언

劉正斗의장

8. 토의안건:

- 1) 보고사항(朴燦大 간사 낭독)
 - (1) 회의록 낭독
 - (2) 단오절 축하대회 교섭절차에 대한 설명

※ 긴급동의 성립: 금회 회의 회기의 의원일비를 극빈자 구호자금으로 각출
회사키로 李在洪의원 긴급동의(전원 가결)

※ 劉正斗의장과 李小圭부의장이 사회를 교체

전 법원장 金蓮洙씨 영전 환송차 劉正斗, 金采庸, 吳世一 각 의원 오전
10시 30분 퇴장

2) 위원회 조례안(제 3독회)

(1) 제 4조 제 2항 중 「농림, 상공」을 「농림, 상공수산」으로 「수산」
을 기입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석 18명 중 가 4명으로 부결

(2) 무수정통과(5월 14일부로 시장이 공고토록 연락할 것) 쓰고 지웠음.

3)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2독회)

※ 부의장: 구호자금(의원 일비)은 시급한 것이므로 간사로부터 시당국에 교
섭하여 전 회기분을 전도 받도록 할 것을 요청

(1) 토의방법: 축조토의(부의장 李小圭 낭독)

(2) 무수정 통과

4) 의원비용 변상조례(제 3독회)

(1) 무수정 통과

5) 회의규칙(제 3독회)

(1) 무수정 통과

※ 긴급동의 성립: 사회과장을 참회시켜 피난민에 대한 실정을 청취키로 金
京炫의 원 동의(전원 가결)

※ 사회과장 출장으로 인하여 사회 계장 참회. 난민구호상황 설명

※ 토론을 마치고 오전 회의를 중지하기로 李在洪의원 동의
재석 18명중 가 17명으로 가결

◇ 李小圭 부의장

- 휴회선언

(오전 12시 10분)

◇ 劉正斗의장

- 속개선언

(오후 2시 40분)

1) 참회인원: 19명

※ 목포일보 기사사건 양 자 원만합의 요지표명: 劉正斗, 金采庸의원

※오후 2시 45분 金京炫의원 참회

2) 각 분과위원회 의원 선거

(1) 선거 방법: 각 의원의 희망을 들어 각자 전문부문을 선택케 하고 만일 위원이 정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정원을 초과할 때는 의장이 절충위원 2명을 지정하여 조절기로 하며, 현 석순에 의하여 희망부서를 구두 신입기로 李在洪의원 동의(전원 가결)

(2) 신입상황

① 내무분과위원회: 정원 9인

陳福春, 林一男, 金八用, 朴贊圭,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李小圭, 劉正斗

② 산업분과위원회: 정원 4인

明南喆, 李在洪, 文宅鎬, 金吉煥

③ 문교사회위원회: 정원 7인

李福柱, 金三星, 金南鎭, 金京炫,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④ 징계자격위원회: 정원 5인

林一男, 李在洪, 李福柱, 李文吉, 吳世一, 金南鎭, 金京炫, 鄭應杓, 朴贊圭, 金子洪, 金采庸

(3) 전형위원: 金八用, 文宅鎬

① 양위원 공작(10분간)

※ 오후 3시 李小圭의원 참회

② 내무위원 陳福春을 산업위원으로 결정

③ 징계자격위원 林一男, 李福柱, 李文吉, 金采庸, 金八用 각 의원으로 결정

④ 기타 신입과 여히 가결 결정

◇ 劉正斗의장

- 휴회선언 오후 3시 38분

(5분간 휴회)

◇ 劉正斗의장

- 속개선언

(오후 3시 45분)

1) 각 분과위원장 호선

(1) 선거방법: 무기명 투표

(2) 개표방법: 서기 감표하에 개표

(3) 개표상황

① 내무위원회위원장: 金采庸: 5표 당선, 金子洪: 4표

② 산업위원회위원장: 明南喆: 3표 당선, 文宅鎬: 2표

③ 문교사회위원장: 金京炫: 7표 당선

④ 징계위원회위원장: 李福柱: 3표 당선, 金采庸: 1표, 吳世一: 1표

※ 金采庸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장 사퇴 표명으로 재선 결정

⑤ 개표상황:

金子洪: 4표 당선, 金永完: 3표, 金采庸: 2표

(4)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의장 선언

※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등록 광고: (시장학사 金順圭)

※ 기타토론: 10분간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4시 35분)

◇ 劉正斗 의장

- 의회록 서명의원에 明南喆, 李福柱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15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明 南 喆

": 李 福 柱

作成者 書記: 姜 聲 哲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5차 회의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관남, 양종수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 간사

- 보고사항 낭독(내용은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잠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선거위원장으로 계셨고, 목포지방법원장으로 계시는 金蓮洙씨가 금반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광주로 출영케 되었사오니 전부 가서 환송하여야 할 것이 온데 전반, 시간관계로 희망하신 분만 마당에 모이기로 합시다.

◇ 李在洪의원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어제 식량문제가 나왔듯이 오늘아침 동회에서 여러가지 대책문제를 토의하여 세공민을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시의회 비용변상 조례안을 전부 세공민 구호대책에 써 주기를 동의합니다.(동의하는 의원 있음)

◇ 劉正斗 의장

- 2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李小圭 의원

- 지금 의장님이 환송을 가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회순에 따라서 위원회 제 3독회를 하겠습니다.

金采庸의원, 吳世一의원 나갔습니다.

◇ 李福柱 의원

- 제 4조에 있어 제목에 들어서 2항목을 보면 산업위원회는 농림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우리 목포시의 현상을 과거나 현재나 수산업이 없이는 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 수산에 대한 것을 가입하여 주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의원 있음)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제가 조례 안을 1조목 1조목 낭독하겠습니다.

제 1조부터 제 7조까지 무수정 통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나 수정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 3독회까지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겠습니다.

◇ 金子洪의원

- 지금 한 배급소에서 16,000명 내지 20,000명이 수배하고 있어 대단히 복잡하오니 절대적으로 배급소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 李在洪의원

- 이것에 대해서는 식량대책위원회 초안을 먼저 낭독한 후 가부를 결정하기로 합시다.

※초안 낭독은 金永完의원으로부터 낭독하였음

◇ 金京炫의원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장을 오시라 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 劉正斗 의장

- 반복하여 가부를 물었습니다.

- 가라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 사회과장님 오셨습니다.

◇ 李福柱의원

- 현재 목포시내에 피난민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계장

- 구체적인 내용은 시사사회계장이 낭독하였음.

(원고 지참으로 생략함)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으나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오전 회의는 그만 두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오전 12시 10분 산회)

(오 후)

◇ 劉正斗 의장

-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회의 진행에 있어서 金采庸의원으로부터의 목포일보 기사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목포일보사에서 항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까지 원만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金采庸의원

- 본 의원이 어제 목포일보 기사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목포일보사에서 그러한 제의가 있었으므로 언론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출입기자에 대한 발언은 취소합니다.

◇ 劉正斗 의장

- 분과위원회 위원선거로 들어가겠는데 이 선거는 중대한 만큼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 李在洪의원

- 위원회 위원선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선출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선출에 대하여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므로 희망 한다고 하여 정원이 초과되면 전형위원 2명을 선출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분과위원회 부서

1. 내무위원회: 9명(성명은 생략)
2. 산업위원회: 5명(성명은 생략)
3. 문교사회위원회: 7명(성명은 생략)
4. 징계자격위원회: 5명(성명은 생략)

◇ 劉正斗 의장

- 이상으로써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결정하였으니 발표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기 위하여 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으로부터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각 위원측 위원을 호선할 것입니다.

위원장 호선하는데 있어서 각 위별로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집단 해가지고 할 것인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李福柱의원

- 각 소속 위원별로 합시다.

◇ 金三星의원

- 현 좌석에서 각 소속위원, 특히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이의 없습니까?

투표 시작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개표를 하겠습니다.

1. 내무위원장: 金采庸 5표
2. 산업위원장: 明南喆 2표
3. 문교사회위원장: 金京炫 7표
4. 징계자격위원장: 李福柱 3표

◇ 金采庸의원

- 나는 내무위원장을 사퇴하겠으니 차점자인 金子洪의원으로 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그것은 중임인 만큼 좀 난처하오니 그대로 하십시오.

◇ 明南喆의원

- 나도 내 일신상 산업위원장을 사퇴 하겠사오니 다시 투표하여 주십시오.

◇ 文宅鎬의원

- 민주주의니 만큼 민의를 무시할 수 없으니 다시 투표합시다.

◇ 劉正斗 의장

-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金子洪 4표

◇ 金采庸의원

- 내일까지 우리의 회기인데 내일은 별다른 회의가 아니고 단기 4285(1952)년도 예산보고에 불과하오니 내일 회의를 오늘 조사하여 시간도 있고 하니 오늘 전부 회의를 마치기로 긴급동의합니다.

(동의입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

◇ 林一男의원

- 그것은 어제 회의에서 식량대책위원을 조직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삼학도 놀이의 문제가 있으므로 아직 주최자 측에 못 가고 내일 갈 것이니 내일까지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가부를 묻겠습니다.
- 오늘로 하자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지 1로 1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文宅鎬의원

- 요즈음 시내에 떠도는 낭설인지는 모르나 들어보면 13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시의회에 보내 놓으니 이력서를 들고 신임시장을 싸들면서 취직운동을 하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러므로 여기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니 그런 사실을 물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의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그럼 부시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徐良鳳 부시장

- 의회가 구성된 오늘까지 그런 사실이라고는 아직 나는 못 봤습니다. 있다면 의회사무를 보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채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 28분 산회)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6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5월 16일 오전 10시 5분

2. 장 소: 목포시청 회의실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21명(전원참석)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文宅鎬,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4.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예산보고

3) 개 회 식

(1) 개 식 사

(2) 국기경례

(3) 애국가봉창

(4) 식 사

(5) 만세삼창

(6) 폐 식 사

4) 미진사항

(1) 단오절 축하대회 장소변경 교섭 결과보고

(2) 식량대책위원회 경과보고

5. 개회선언

의장

(오전 10시 5분)

6. 토의안건:

1) 보고사항(朴燦大 간사 낭독)

※ 긴급동의 성립: 李福柱의원(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각 학구별로 2명씩 선출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

※ 긴급동의 성립(金永完의원: 식량보관사항 조사 부패에 대한 대책강구와 도 시민용 긴급 수배키 위하여 3명의 산업위원을 파견 조사케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 바 부결)

2) 단기 4285(1952)년도 목포시 예산보고

※ 소관담당 직원: 시정계 강성철 설명

※ 각 특별회계 예산보고는 차기(5월 24일)에 보고기로 가결

※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신청 중이어서 승인 후 1차 의회에 보고기로 함

※ 극빈자 배급에 대한 설명을 산업과장에게 청취기로 하자는 李小圭의원 동의 가결

※ 산업과장 참회 설명: 구호미 50석 단, 유상배급을 무상으로 배급케 하자는 토론 8분간

※ 사회과의 구호자금을 염출하여 무상배급을 실시토록 하되 교섭위원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일임기로 하자는 李文吉의원의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

※ 후생주택 문제 약 5분간 토론

3) 단오절 축하대회 장소변경 교섭결과 보고

※ 보고요지: 직접 관계 있는 삼학도민과 주최측, 후원측 및 치안담당 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부하겠다 하며, 흥행함을 희망하고 있다는 요지

※ 토론 약 15분간

※ 원 결의안과 같이 추진키로 가결

※ 긴급동의 성립: 공기가 험악하므로 오전회의는 이로서 휴회하자는 鄭應杓 의원

◇ 의장 劉正斗

- 휴회선언 (오후 1시)

◇ 의장 劉正斗

- 속개선언 (오후 2시 40분)

※ 참석의원: 18명, 金京炫의원 오후 2시 41분 참회

◇ 劉正斗 의장

- 오전에 이어서 삼학도 단오놀이에 대한 교섭방법을 토의 요청

◇ 金采庸 의원

- 종전의 교섭위원 3인이 당초의결의 그대로 꾸준히 노력키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만장일치 가결

4) 식량긴급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1) 간사 경과보고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칙낭독과 아울러 설명

※ 李小圭, 林一男의원 2시 50분 참석

(3) 회칙의 자구수정과 조문의정정은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키로 만장일치 가결

※ 기타토론: 30분간

◇ 劉正斗 의장

- 폐회선언

(오후 3시 30분)

◇ 劉正斗 의장

- 폐식거행

1. 개 회 식: 간사

2. 국기경례

3. 애국가 봉창

4. 식 사: 의장

5. 만세삼창

6. 폐 식 사

◇ 劉正斗 의장

- 서명위원에 陳福春, 金京炫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5월 16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陳 福 春

”: 金 京 炫

作成者 書記: 姜 聲 哲

제 1회 목포시의회 제 6차 속기록

담당속기사: 양관남, 양종수

(오 전)

(재석의원 21명으로 개회함)

◇ 劉正斗 의장

-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朴燦大 간사

- 보고사항 낭독하였음(생략함)

◇ 李福柱의원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을 통해서 교육위원을 구성 선출하는데 우리는 특히 주의하여야하며,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선거함으로써 성립된 우리 교육위원회를 선임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포에도 현재 5개의 국민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 실정을 보면은 중앙지대에 있는 국민학교는 모든 시설이 풍부하고 지리적 조건이 좋으나 서부학교 산정학교를 본다면 학교운영에 커다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어느 학교라고 하여서 좋고 나쁘고 할 것이 없이 교육위원회 위한 10명을 각 학구별로 2명씩 선출해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균등한 실정을 파악키 위하여 그대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陳福春의원

- 방금李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학구별로 10명을 선출하여 한다는 것은 전 시내의 실정을 파악하기 곤란하오니 전 시내를 망라하여 학구별로 2명씩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가부를 묻겠습니다.

李福柱의원의 말씀을 반복하고, 陳福春의원의 말씀을 반복하여 먼저 李의원, 陳의원의 발언에 찬동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金永完의원

- 어제 광주에서는 벌써 시의원이 목포로 광주에 할당된 식량을 가지러 왔다는 말이 들리는데 우리 목포는 아사지경을 당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대책을 하며 어제도 제주도로 쌀을 실어 갔는데 창고에서 부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그 원인과 사실을 조사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위원회 2명이 가서 오늘 즉시 조사토록 하여 주시고 미창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 文宅鎬의원

- 저는 도정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쌀이 썩은 원인은 쌀을 도정하여 창고에 넣으면 관계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송을 하여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오나 그렇지 않으므로 자연 창고에서 시일을 가게 된 쌀이 썩어 나오는 것이 오늘날까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을 추궁한다 하더라도 미창에서는 금융조합으로 미는 현실로 원인 조사와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 李小圭 의원

- 요즈음 들어보면 시내 곤란한 시민을 위하여 시청으로부터 백미 1斗씩을 무상으로 배급한다는 이런 말이 있으니 시 산업과장을 오시라고 하여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 보기로 합시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 劉正斗 의장

- 반복하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 산업과장 金容俊

- 실은 이번 춘궁기에 살아나기 위하여 전반 도로부터 백미 50석을 가져와서 배급할까 하다가 아사지경에 당할 경우에 배급도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 최고도의 춘궁기로 말미암아 1斗씩을 배급코자 하는데 대금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올시다. (그리고 기타 토론 사항과 과장의 계획서 지참 낭독키로 이하는 생략함)

◇ 劉正斗 의장

- 단기 4285(1952)년도 예산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목포의 살림살이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편성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오나 신년도 회계연도가 넘어간 일이며, 편성하여 사용 중에 있사오니 무수정 통과하기로 할까요?

그렇지 않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陳福春의원

- 지금 우리가 다시 수정할 수도 없고 하오니 그대로 금년도에 한하여는 통과시키고 명년부터는 철저히 합시다.

(동의합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단,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는 오는 5월 24일에 제출 검토키로 하였음)

◇ 劉正斗 의장

- 어제 미진 사항으로 들었던 삼학도 단오제 장소변경과 시일의 단축에 대한 교섭위원회 보고 사항을 듣기로 합시다.

李小圭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李小圭 의원

- 보고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는 주최자나 후원자나 전부가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저는 교섭위원회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후 장내가 소란, 이하 략함)

◇ 劉正斗 의장

- 장내 수습상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전 12시 10분)

(오 후)

(제석의원 17명으로 개회 3분 후 4인이 입장함)

◇ 劉正斗 의장

- 오전을 계속해서 삼학도 단오제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를 하여 주십시오.

◇ 金采庸의원

- 그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를 이 본회의에 오전 중에도 여러 가지 장시간 토론하였지만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교섭의원 3명이 계속해서 교섭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찬성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劉正斗 의장

- 반복하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20명 전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明南喆의원

- 오늘 주최자를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장소변경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 劉正斗 의장

- 식량대책위원회 결과 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 金永完의원

- 원고지참 낭독함

◇ 劉正斗 의장

- 지금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식량대책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연구(言句)나 기타 수정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하는 이 있음)

◇ 李小圭 의원

- 방금 점심을 먹고 오는데 文宅鎬의원과 李小圭 의원이 폐회하고 나가다가 서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언쟁을 하면서 주먹을 내놓고 싸우려면 싸우자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로 기억이 나지 않으나 무슨 일이 되었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13만 시민에 대해 불 낫이 없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있으니 서로 타파하고 양해를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일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金吉煥의원

- 오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시간관념이 적어 오늘 오후만 하더라도 30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그럼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폐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